건설현장의 안전활동기법

박 무 일 우리 협회 교수
건설안전기술사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안전활동을 위한 신규채용시 교육 및 사전협의, 안전순찰, 안전행사 등에 대한 실용적인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신규채용시 교육

현장에서의 신규채용시 교육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소속회사원이든 경력이 많은 기능공이든간에 그 현장에 처음 출입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현장의 규칙을 알려주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 현장이라면 이 신규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목적

원도급자측에는 작업장내 규율 유지, 산업재해예방과 생산성 향상 및 일체감 조성을 도모하고 의식고취를 위함이며 협력사측은 해당작업 착수전에 실시한다.

유의할 사항은 신규참여 작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통상적인 고용교육 외 현장에 있는 환경, 작업조건 및 근무규칙(요령)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간

원도급자측은 현장 출근시 도는 안전조회 후 실시하며 협력사측은 작업수배시 및 해당공사 인원배치 예정확정 후 실시하고 작업당일은 조회 후 실시

(3) 장소

가능한 한 교육장을 확보하여 활용하며 미비시는 회의실 등도 사용 가능하다. 특별히 필요시는 각자의 위험장소와 그 주변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여 준다.

(4) 실시자

안전관리자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되 필요시는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실시도 가능하다. 협력사측은 작업반장 또는 작업책임자가 실시한다.

(5) 교육 내용

신규참여 작업자에 대한 총괄관리 측면에서의 주의 및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구체적인 현장의 특수성과 각 작업자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시키며 동시에 현장의 규칙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협력사측은 작업내용 및 작업장소 변경 등을 감

안하여 현장 작업 전에 반드시 실시한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키며 원도급자측은 이 교육을 지원 및 확인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협력사측에서는 현장 출입 전에 반드시 실시한다. 당일 나와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에 의거 실시하며 주로 현장상황, 공사개요, 현장의 조직, 기구, 일반적인 준수사항, 보호구 사용방법, 재해사례, 안전행사, 긴급시 조치요령, 현장위험장소 및 작업, 교통재해 예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중점관리사항

협력사측 신규 출력인력에 대한 지도상황을 확인하고, 집합 및 개별교육을 적절히 활용하며 건강상태와 기능 및 신원 확인을 한다.

이 신규교육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교육이므로 원도급자는 적극 지원 및 확인을 하고 협력사측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2. 작업예정자의 사전협의

현장에 작업 실시할 예정자가 결정되면 작업을 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총괄관리자의 책임임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 기여되며 협력사측에는 작업실시자에 대한 책임부여 및 교육실시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1) 업무내용

시공계획, 시공요령, 작업요령, 관련서류, 고용시의 교육, 고용시의 건강진단 등에 대한 실시 및 지도를 하며 협력사측은 현장설명(입지조건, 특수공법, 현장의 특수성 등), 계획에 따른 작업순서(서류), 유자격자의 서류를 제출한다. 특히 작업책임자 등 관계자에게는 이 내용을 철저히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원도급과 협력사간의 협의사항은 규정화하고 시공요령은 원·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건강진단 결과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실시하여 요원을 확보하여 둔다.

(2) 실시 시기

협력사 결정 직후(작업착수 1개월~15일 전) 협력사는 원도급자와 회의 전에 준비

(3) 장소는 원도급 사무실에서 간부 및 담당직원이 실시

(4) 유의사항

계획, 시공요령, 작업순서 등은 계획 완료시 관련 사업자를 소집한다. 방침, 계획, 관계서류 등은 원·하도급자가 모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고 상호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협력사는 원도급측 회의 종료 후 자체계획을 확정, 실시한다. 즉 최종적인 수주공사의 시공에 대한 하도급 안전관리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다.

3. 안전순찰(Patrol)

현장의 안전순찰은 현장에서 위험개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책임자가 항상 관심을 두고 하여야 할 일이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각각의 시각에서 봄으로써 안전시공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시작 이후 시간이 경과될수록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 발생되므로 이를 점검한다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관계서류, 작업표준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방법의 수정 필요 여부, 관계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관리감독자는 매일 1회 이상 해당작업부서를 순시하며 작업자의 행동, 작업방법 적합여부 등에 대한 것은 특별히 횟수를 늘여서 실시한다.

경영자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를 대동하여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경영자나 책임자의 명의로 시정지시를 한다.

안전규정 위반 기타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시킨다.

그외 실시시 유의사항은

(1)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순찰방법, 중점사항, 지적사항의 처리, 시정의 확인사항을 정한다.

(2)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3) 물적 상태 확인도 중요하지만 작업행동에 관련된 작업방법, 공구 및 보호구의 사용, 복장, 작업행동들도 반드시 확인한다.

4. 안전행사

(1) 목적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월 특정일을 정하여 실시하며, 또한 전국안전주간(매년 7월 첫째주) 등 특별한 행사기간중에 실시하기도 한다. 행사시 실시할 내용은 개인표창, 협력회사 표창, 기념품 증정, 안전강연 등을 포함한다.

(2) 장소는 작업장내 적절한 옥내외 공간을 활용하며 원도급자가 주최하고 원·하도급 종사자 전원이 참석한다. 또한 원·하도급 공동으로 하기도 하지만 각각 단독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3) 실시 내용은 지난달 안전실적 평가, 이달의 공정설명, 공정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대책의 설명, 안전표창(개인 및 단체의 안전성적 발표) 들을 실시한다.

1) 소장 : 인사말 또는 강연

2) 공사개요의 설명

3) 공정에 따른 안저상의 주의사항 또는 재해사례 등

4) 유경험자에 의한 경험담 발표

5) 안전보건 표창

6) 특별강연

7) 참가 기념품 및 안전관계자료 제공

8) 건강진단, 체력측정 등에 대한 행사계획의 설명

행사중 협학회사에 대한 안전순찰을 실시하며 행사 전후에 건강진단, 체력측정 등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표창에 있어서는 표창기준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행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안전의식 고취에 있으므로 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